

법률의견서

이루고월드코인(Erugo World Coin, EWC), 루고 토큰(Rugo Token, RUGO)의 법적 성격 분석

이루고월드코인(Erugo World Coin, EWC), 루고 토큰(Rugo Token, RUGO)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한국의 현행 법체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 정부나 금융감독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 새로운 규제정책,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1. 이루고월드코인(EWC), 루고 토큰(RUGO)의 기본 개념

EWC는 현실의 자산과 간접적으로 페깅(Pegging, 연동)되는 암호화폐이다. RUGO는 EWC를 기반으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 개별 건설시행사업 건, 수익형 부동산 사업거래 (여행, 콘도, 리조트 등), 나아가 지식재산권 등 각 개별사업마다 그 연동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EWC를 이용하여 RUGO를 매입할 수 있다.

EWC와 RUGO는 주권 서류 대신 토큰 지분화를 통한 회사의 지분 또는 증권 배분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건설시행사업 진행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아이템을 위한 토큰, 지식 재산권에 대한 파트너쉽, 로열티 또는 수익 분배 플랫폼을 위한 토큰, 아이템을 이전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크라우드펀딩 아이템을 위한 토큰과 같이 프로젝트의 지분을 토큰화 하거나, 재판매가 가능한 각종 공연, 경기 티켓, 특정 활동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접속 토큰, 게임 플랫폼 외부로 전송 가능한 게임 화폐 또는 아이템 등 가상 상품을 토큰화할 수 있으며, 기프트카드, 항공 마일리지, 보상 포인트 등 크레딧을 토큰화할 수 있다. 토큰 사용 연계비즈니스 모델로는 세탁하는 소, 취미공간렌탈서비스, 주유소사업, 반려동물용품 인터넷 쇼핑몰 등이 개발

종이다.

2. 한국의 법제 상 EWC/RUGO의 성격 분석

A. 증권(Equity Securities)에 해당하는가?

i.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자본시장법(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제3조는 “투자성(원본 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즉,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등 포함)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ii. 증권(Securities)과 파생상품(Derivatives)의 차이

자본시장법(제4조, 제5조)은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즉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iii.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이란 무엇인가?

자본시장법 제4조는 포괄주의를 채택해 유가증권을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채무증권(Debt securities),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s), 투

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Derivatives-linked securities), 증권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s)등 넓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의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B. 자본시장법상 ERC의 법적 성격

EWC는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으로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에서 지분증권이 되려면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EWC는 EWC 생태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분”도 표상하지 않는다. 또 누군가 EWC/RUGO를 보유하였다고 해서 EWC생태계의 어떤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다. 즉, EWC/RUGO는 EWC생태계의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매개체일 뿐 생태계 자체와 관련된 특정한 권리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EWC를 한국 자본시장법상의 지분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집합투자증권(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해당하는가?

A.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의 정의

한국에서 “집합투자업”은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한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실적배당원칙)하는 업이다(제8조).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제9조).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 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B. 자본시장법상 EWC의 법적 성격

EWC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보기도 어렵다. “집합투자”라는 행위는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의 운용결과를 투자자들에게 실적 배당하는 것이다. “집합투자기구”란 그런 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를 말한다. 그러나 EWC/RUGO의 코인 거래소 상장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EWC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뿐이다. 거기서 생긴 수익이 직접적으로 코인매수자들에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WC생태계는 집합투자를 영위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EWC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다.

4. 암호화폐와 관련된 한국의 판례동향

아직까지 한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많지 않다. 최근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으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 규제법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가맹점을 통해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봄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규제를 만들 때까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들이 합법도 위법도 아닌 중간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EWC/RUGO는 한국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이나 집합투자증권(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불어, 채무증권(Debt securities),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s),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Derivatives-linked securities), 증권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s)등 한국 자본시장법 제4조의 다른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궁극적으로는, EWC/RUGO가 한국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EWC/RUGO는 주식형 토큰이라거나, 화폐 등 고정적인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지 않는다. 즉 EWC/RUGO는 그 자체로서 EWC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암호화폐일 뿐 현재 또는 장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아니므로 한국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어렵다.

2021. 9. 24.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허 왕

